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발달장애인 정의에 뇌병변장애인 포함〉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951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95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6. 2. 23.

(3) 회 부 일 : 2026. 2.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 발달기에 발생한 뇌의 기질적 병변을 가진 뇌병변장애인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와 유사하게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과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시적인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달장애인의 정의에 발달기에 발생한 뇌병변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상 발달장애인의 정의에 뇌병변장애인 중 뇌성마비·외상성 뇌손상 등 발달기에 발생한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 나. (생략) <u><신설></u> 다. (생략) 2. (생략)	제2조(정의) ----- -----. 1. ----- -----. 가. ~ 나. (현행과 같음) <u>다. 뇌병변장애인 중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소아 뇌졸중 등 발달기에 발생한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u> 라. (현행 다목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및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통령령에서는 해당 범위를 구체화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개정안은 뇌병변장애인을 현행법상 발달장애인 정의에 포함하여, 의사소통 지원, 돌봄서비스, 자기결정권 보장 등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참고자료 1: 현행법상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현황).

-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12.3%는 대부분 또는 거의 남의 도움을 전적으로 필요로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1)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장애계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주요 단체의 경우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 법률상 규정된 사항 이외 특이 소요 발생이 없어 제정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출함.

자폐성장장애인(56.6%), 뇌병변장애인(37.3%), 지적장애인(32.5%)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으로 고려하면,²⁾

- 지원의 필요와 강도 측면에서 뇌병변장애인이 지적장애인·자폐성장장애인과 유사한 특성을 보일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발달장애인이 지적장애인·자폐성장장애인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지원체계 적용에서 배제되어 왔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참고자료 2: 뇌병변장애인 현황).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첫째, 현행법은 지적·자폐성장장애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발달장애인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뇌병변장애인 중 일부를 발달장애인 범주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면, 우선 시행령에서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특정 장애유형을 직접 열거하여 정의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함.

□ 둘째, 개정안에서는 뇌병변장애인 중 ‘발달기에 발생한 뇌의 기질적 병변’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발달기’의 의미와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동일한 진단이라도 발병 시기에 따라 대상자 선정 범위가 달라지는 등 운영상 편차가

2) 2024년 기준 등록장애인 전체 약 263만 명 중 지적장애인은 약 23만 명(8.9%), 자폐성장장애인은 약 4만 7천 명(1.8%), 뇌병변장애인은 약 23만 명(8.9%)임(한국장애인개발원, 2025 장애통계연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발달기’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와 같이 연령 기준을 두는 방식 또는 하위법령에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식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9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장애 발생시기·원인 등 상이한 장애 특성, 관련 단체의 반대 의견, 개정안의 개념 모호성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다만, 발달장애의 범주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이견(異見)을 고려하여 하위법령 보다는 법률 차원에서 명확한 개념 정의(ex. 연령기준 추가 등)가 바람직하며, 뇌병변장애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나. 한국장애인부모회

- 대상 범위의 모호한 확장은 정책 실효성 저해(자원 분산), 지원 대상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 뇌병변장애는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신체 기능 의료재활 중심이며, 반면, 발달장애는 인지발달 중심으로 장애특성의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인지, 발달 중심 서비스 전제로 제정된 현행법상 지원 목적·체계의 혼선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현행법상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대상	지원내용	법적 근거	2026년 예산(국비) (국비:지방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적(7일)으로 24시간 돌봄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8,334/ 보조율 50~70%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관련 분야 종사자 등	•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902/ 보조율 50%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 개별/집단 상담 제공 • 월 16만원 바우처 제공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1,286/ 보조율 50~70%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 휴식지원 참여시 돌봄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3,216/ 보조율 50~70%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	•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심판청구를 위한 행정절차 전 과정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3,541/ 보조율 50~80%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주간에 지역사회 내 자립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해 참여형, 창의형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288,671/ 보조율 50~70%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 6세 이상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장애인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 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68,502/ 보조율 50~70%
중증발달장애인 최종합계 중증장애 인사 발달장애 인사	•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장애인 중, 심한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 수행능력에 심한 제약이 있어 통합 돌봄이 필요한 자	• 장애 정도와 지원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낮활동, 야간돌봄 등 1:1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92,058/ 보조율 40~70%

사업명	대상	지원내용	법적 근거	2026년 예산(국비) (국비:지방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사업	• 성인 발달장애인	• 금전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고, 위탁재산의 적절한 용을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1,122/ 보조율 100%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2: 뇌병변장애인 현황〉

(대상자) 전체 263명 중 23.5만명(8.9%)으로 지적장애(23.3만명)와 비슷

(연령별) 60세 이상 65.4%(80세 이상 16.9%, 70~79세 24.6%, 60~69세 23.9%)

(장애부위) 하지장애 97.2%, 상지 90.5%, 척추 9.7%(중복응답)

* 상지와 하지 모두 장애가 있는 비중 높으며, 뇌병변장애 중 뇌졸중이 큰 비중 차지

(주요증상) 경직 80.0%, 관절구축 69.2%, 운동실조 58.2%, 불수의운동 37.7%, 통증 37.1%, 배변·배뇨장애 24.5%, 연하장애 13.7%

* (관절구축)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아 관절가동범위 제한, (운동실조) 근기능 이상 등 운동기능 장애, (불수의운동) 의지와 무관하게 신체 일부가 움직이는 현상, (연하장애) 음식 삼키는 기능 장애

(동반장애) 언어장애 37.3%, 지적장애 15.5%, 시각장애 14.4%

(발생시기) 만 1~19세 9.9%, 만 30세 이상 86%

* (지적) 만1~19세 90.4%, 만 30세 이상 6.7%/ (자폐성) 만 1~19세 100%

(장애원인) 선천적(3.0%), 출생시(7.2%), 후천적(88.5%)

* 후천적 원인 중 질환*(88.2%), 사고(11.8%) 順

* 뇌병변장애는 심혈관질환(75.4%), 신경계 질환(8.8%)인 반면, 지적장애는 신경계 질환(31.4%), 심혈관질환(2.45), 자폐성장애는 정신질환(71.1%), 신경계 질환(28.9%)

자료: 보건복지부